

골드바 약관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골드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고객과 주식회사 한국금거래소 쓰리엠 (이하 '쓰리엠' 이라 함)을 대리하여 골드바를 판매 또는 매입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은행" 이라 함) 간에 이루어지는 골드바의 매매거래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골드바 매매대행의 개요

- ① 은행은 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에게 골드바를 판매(이하 "판매대행 거래" 이라 함)하거나,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대행한 골드바를 쓰리엠을 대리하여 고객으로부터 다시 매입(이하 "매입대행 거래" 이라 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② 골드바 판매대행거래 또는 매입대행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쓰리엠과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 골드바 정의 및 종류

- ① 이 약관에서 '골드바'란 금을 바(Bar) 형태로 주조하여 통용되고 있는 실물형태의 금으로서, LS-Nikko동체련(주)에서 제조하고 쓰리엠에서 순도 99.99% 및 질량을 보증하는 골드바를 말합니다.
- ② 골드바 판매단위는 10g, 100g, 1kg, Large Gold Bar(±12.5kg)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대상고객

은행은 실명이 확인된 개인고객(개인사업자, 법인, 미성년자 및 대리인 거래불가)에 한하여 골드바의 판매대행 거래 또는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에 의해 가능합니다.

제5조 거래장소

고객은 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에서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합니다. 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이 지정한 영업점을 변경할 경우 은행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제6조 매매대금 정산

고객은 본인이 예금주인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통해 골드바 매매대금(고객 매입 시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거나 수취합니다.

제7조 매매가격의 결정

① 기준가격의 결정

1. '기준가격'은 국제금시세와 환율에 따라 계산된 1g(그램)당 원화표시 가격이며, 은행은 국제금시세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시로 기준가격을 고시합니다.

$$\text{기준가격(원/g)} = \text{국제금시세 } (\$/\text{oz}) \div 31.1034768 \text{ (g/oz t)} \times \text{환율(원/\$)}$$

2. '기준가격'은 고객의 거래시점에 고시된 가격을 적용하며, '거래시점'이란 고객이 작성한 신청서의 내용이 은행 전산단말기에 입력 완료되어 매매가격이 산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3. 제1호에서 '국제금시세'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한 1 트로이온스(Troy ounce, oz t) 당 미국 달러화 표시가격을 말합니다.
4. 제1호에서 '환율'은 거래시점에 은행이 고시한 US달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② 매매가격의 결정

1. 고객이 골드바를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매매가격'이라고 합니다.
2. 매매가격은 고객이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골드바의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text{고객이 살 때}] \text{ 판매가격(원)} = \text{기준가격(원)} \times \text{골드바중량(g)} \times (1 + \text{판매수수료율})$$

$$[\text{고객이 팔 때}] \text{ 매입가격(원)} = \text{기준가격(원)} \times \text{골드바중량(g)} \times (1 - \text{매입수수료율})$$

3. 제2호에서 규정된 판매수수료율과 매입수수료율은 골드바 중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10g | 100g | 1kg | Large Gold Bar(±12.5kg) |
|--------|-----|------|------|-------------------------|
| 판매수수료율 | 7% | 5% | 4.9% | 4.8% |
| 매입수수료율 | | | 5% | |

4. 고객과의 매매시에 적용되는 최종 판매(매입)가격은 제2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십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적용합니다.
5. 제3호의 수수료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8조 부가가치세 납부

- ① 고객이 골드바를 매입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부가가치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판매가격(고객의 매입가격)} \times 10\%$$

제9조 골드바 판매대행 절차

-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매입 하는 경우 은행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② 고객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판매가격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은행에 지급해야 하며, 은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서 동 금액을 인출합니다. 이때 은행은 은행이 정한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 ③ 골드바의 판매대행 거래는 고객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된 시점에 체결이 성립된 것으로 하며, 판매대행 거래가 체결된 이후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④ 은행은 판매대행 거래 체결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골드바 실물을 교부합니다.
- ⑤ 은행은 골드바 실물이 거래 영업점에 도달한 날,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고객에게 골드바 수령을 통지합니다.

제10조 골드바 매입대행 절차

- ① 고객이 은행을 통해 골드바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보증서에 의해 은행이 판매대행 거래한 골드바 임이 확인되고, 골드바의 씨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지 않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대행 거래를 합니다.
- ② 고객이 은행을 통하여 골드바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③ 고객은 신청서 작성과 함께 골드바 실물은 은행에 인도해야 하며, 은행은 제7조에 따라 산출된 매입가격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실물인수에 대한 은행이 정한 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 ④ 골드바의 매입대행 거래는 고객 요청에 의해 은행이 골드바 실물을 인수하고 매입가격이 산출된 시점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은행은 고객에게 인도받은 골드바를 쓰리엠에게 전달하며, 쓰리엠은 골드바의 품질보증서, 씨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지 않고, 중량과 외형이 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매입합니다.
- ⑥ 은행은 쓰리엠으로부터 받은 골드바 실물 품질검사에 대한 매입승인여부 통보를 즉각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매입승인일 경우 매입대행 거래일로부터 최대 4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매입가격을 입금하며, 매입거절일 경우 매입거절 통보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매도를 신청한 영업점을 통해 골드바 실물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11조 유의사항

- ① 골드바 실물보유는 국제금시세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② 골드바의 매매가격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실시간 변동되므로 고객이 상당한 시점에 조회한 가격과 직원의 전산조작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골드바 매매거래는 실명으로 합니다.
- ④ 은행은 쓰리엠 재고가 부족할 경우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고객의 매매신청이 접수된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인도일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 ⑤ 은행은 품질보증서, 씨리얼넘버 및 포장케이스가 훼손되거나, 골드바의 외형이 손상되어 위·변조가 의심되는 골드바에 대하여는 매입대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⑥ 은행은 은행과 쓰리엠 사이의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되거나, 쓰리엠이 해산, 폐업, 영업정지, 영업양도, 관련법령의 개폐 등으로 은행이 골드바 판매/매입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골드바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⑦ 은행은 제6항에서 정한 업무 종료사유 중 업무대행계약이 종료됨으로서 골드바 매매대행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는 업무종료일 1개월 전부터 한 달간 아래 각호의 방법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1.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
3. 고객이 신고한 전자우편(e-mail), 문자메세지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골드바 매매대금을 처리한 거래통장에 표기
- ⑧ 은행은 전쟁, 천재지변, 전산장애, 정전,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를 일시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사항

- ① 은행은 국제금시세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제10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매입대행 거래를 할 수 없거나, 제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로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골드바를 매입대행 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고객이 최초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객이 이러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고객이 제4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약관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개별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은행 사이의 거래에는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최종 영업일까지 골드바 매매대행거래를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예금자 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분쟁 조정

- ① 고객은 골드바 매매대행 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고객 사이에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